성과공유제 규정

제정 2013.12.4

개정 2015. 3.23

개정 2018. 7.31

개정 2019. 5. 8

개정 2020. 8.18

개정 2021.10.19

개정 2022.10.25

개정 2023.12.18

[ESG경영처 ESG총괄부 042-600-820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제8조의 성과공유(Benefit Sharing)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① 성과공유제의 시행은 이 규정을 적용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② 본 규정은 성과공유제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 심의회, 계약, 과제수행, 과제선정, 배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20.8.18>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 2. "중견기업"이라 함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개정 2019.5.8>
- 3. "대기업" 이라 함은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 4. "상생협력"이라 함은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간, 중소·중견기업 상호간 또는 위탁기업과 수탁 기업 간에 기술·인력·자금·구매·판로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
- 5. "수·위탁거래"라 함은 제조·공사·가공·수리·판매·용역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물품·부품·반제품 및 원료 등(이하 "물품 등"이라 한다)의 제조·공사·가공·수리·판매·용역 (이하 "제조"라 한다)을 다른 중소 또는 중견기업에 위탁하고, 이를 위탁받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
- 6. "위탁기업"이란 물품, 부품, 반제품(半製品) 및 원료 등(이하 "물품 등"이라 한다)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라 한다)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9.5.8>
- 7. "수탁기업"이란 제6호에 따른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하며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과한 특별법 .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을 포함한다.<개정 2019.5.8>

- 8. "성과공유제" 란 수탁기업이 원가절감 등 수탁·위탁기업 간에 합의한 공동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탁기업이 지원하고 그 성과를 수탁·위탁기업이 공유하는 계약모델을 말한다. <신설 2019.5.8>
- 9. "주관부서"라 함은 성과공유과제를 총괄 관리하는 부서로서 동반성장 담당부서를 말한다. <신설 2020.8.18>
- 10. "사업부서"라 함은 성과공유과제를 발굴·수행하는 실무부서(지사 포함)를 말한다. <신설 2020.8.18>
- 제4조(위임)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성과공유제 조직관리 및 심의회

- **제5조(조직관리)** ① 성과공유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기존조직 중의 담당부서를 선정하거나 신규 조직을 구성한다. 이때의 조직은 기존의 직제규정에 포함하여 적용할 수 있다.
 - ② 성과공유제 담당 임원을 둘 수 있으며, 담당 부서장 및 직원을 둔다. 다만, 기존 부서의 직원이 겸직하도록 할 수 있다.
 - ③ 각 부서의 분장업무는 별표1과 같으나, 기존의 직제규정 또는 업무분장을 위한 규정이 있으면 기존규정을 개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제6조(성과공유심의회)** ① 성과공유제에 대한 과제선정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성과공유심 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개정 2018.7.31. 2020.8.18. 2022.10.25>
 -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8.7.31>
 - 1. 위원장 : 성과공유 주관부서장
 - 2. 위 원 : 성과공유 관련부서 부장 등 위원장이 임명하는 자
 - 3. 간 사 : 성과공유업무 담당<개정 2018.7.31>
 - ③ 위원으로 선정되면 별지 제1호의 서식의 위촉승낙 및 서약서를 작성하여 각각 한 통씩 보관한다.<개정 2021.10.19>
 - ④ 심의회는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외부위원 또는 수탁기업 관계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개정 2018.7.31>
 - ⑤ 심의회의 임무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18.7.31, 2020.8.18>
 - 1. 성과공유 과제선정
 - 2. (삭 제)<개정 2020.8.18>
 - 3. (삭 제)<개정 2020.8.18>
- 제6조의2 (심의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회 위원장 또는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신설 2022.10.25>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다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신설 2022.10.25>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신설 2022.10.25>

제6조의3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사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22.10.25>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4. 제6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한다.<개정 2018.7.31>

- ② 심의회의 성립 및 의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2018.7.31>
- 1.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3.12.18>
- 2.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부의안건을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
- ③ 심의회의 심의 결과는 성과공유 주관부서가 각 부서 및 위·수탁기업에 통보한다.<개정 2018.7.31, 2022.10.25>
- ④ 위·수탁기업은 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시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2.10.25>
- ⑤ 성과공유 주관부서는 심의회의 회의내용 및 심의 결과를 기록 · 유지한다.

제3장 성과공유제 실행

- 제8조(과제제안) ① 성과공유 주관부서는 성과공유제를 실시하기 위한 과제를 공지하고 제안을 접수받아 운영한다. 당사의 임직원과 위·수탁기업 모두 과제 제안의 주체가 된다.<개정 2022.10.25> ② 과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주관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9>
 - 1. 성과공유제 사업계획서
 - 2. 별지 제2호 서식의 성과공유제 과제신청서
 - ③ 수탁기업은 과제 제안시 사업수행에 따른 계약 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임치할 수 있다.<신설 2021.10.19.>
- 제8조의2 (성과공유 담당자의 이해충돌방지) ① 성과공유 주관부서 및 사업부서 담당자(이하 "담

당자"라 한다)는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3조에 해당되는 자가 과제를 제안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동 지침 제4조에 따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25>

- 제9조(계약) ① 성과공유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3호의 서식의 성과공유 표준계약서를 기준으로 상호협의에 따라 계약을 실시한다.<개정 2021.10.19>
 - ② 계약은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관련 규정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과 회계 관련법령,「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등을 준수한다.

제4장 성과공유제 결과보고 및 공유

제10조(결과보고) ① (삭 제)<개정 2020.8.18>

- ② 성과공유 사업부서는 성과공유과제가 완료되면 과제기간 종료일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성과공유과제 결과보고서를 주관부서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0.8.18, 2021.10.19>
- ③ (삭 제)<개정 2020.8.18>
- ④ (삭 제)<개정 2020.8.18>
- ⑤ (삭 제)<개정 2020.8.18>
- ⑥ (삭 제)<개정 2020.8.18>
- ⑦ (삭 제)<개정 2020.8.18>

제11조(공유관리) ① 과제수행결과에 따른 공유를 실시하고 공유기준은 계약서에 따른다.

<개정 2020.8.18>

- ② 성과공유제 주관부서와 계약관련 부서는 공유계획에 따라 위·수탁기업에 금전적 배분, 계약 기간 연장, 기술지원, 등급향상, 물량 확대 및 공급우선권 부여 등의 공유를 실시한다.<개정 2022.10.25>
- ③ 공유가 연도별로 이루어지는 경우, 연도별 공유계획을 수립하고 배분계획에 따른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12월 4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3월 23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7월 3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5월 8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8월 18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10월 19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10월 25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12월 18일 부터 시행한다.

【별표1】<개정 2020.8.18. 2022.10.25>

성과공유제 업무분장

| 구 분 | 세 부 업 무 |
|--------|--|
| 주관부서 | 목표 수립과제제안공고위원회 관리공유관리 |
| 계약부서 | - 계약 |
| 사업부서 | 과제도출과제추진결과보고 |
| 심의회 | - 과제선정 |
| 위・수탁기업 | - 과제제안 - 과제수행 |

【별지1】

| [| | | | | |
|---|--|--|--|--|--|
| 위촉 승낙 및 서약서 | | | | | |
| | | | | | |
| 성명 : | | | | | |
| 소속 : | | | | | |
| | | | | | |
| 본인은 성과공유제 위원으로 위촉됨을 승낙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 | | | |
| 1. 본인은 성과공유제 위원으로서 공정한 업무수행을 할 것을 서약합니다. | | | | | |
| 2. 본인은 성과공유제 위원으로서 업무수행 중 취득한 어떤 내용도 외부에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 | | | |
| | | | | | |
| 20 | | | | | |
| | | | | | |
| 위원 : (서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 귀하 | | | | | |

| 성과공유제 과제 신청서 | | | | |
|--------------|--|--|---------|--|
| 과제명 | 예) 중량물 Flange 보관 Tool 개발 | | | |
| 신청분야 | 예) 신제품·신기술개발/해외 동반진출/기술이전/공정개선/성능개선/ 원가 및 비용 절감/관리 시스템 개선/서비스 용역 개선 | | | |
| 기대효과 | 예) o 중량물 Flange 적재 보관 시 수직 보관이 아닌 개별 보관 거치로 인한 기밀 유지면의 손상 방지 o 필요 중량물 Flange 한번에 인양 차량 적재가 가능하여 안전작업 및 작업 효율 향상 | | | |
| 추진기간 | 예) 2022.7.1. ~ 2024.6.30. (총 24개월). | | | |
| 절감비용 (이익) | 예) O 절감비용 - 수직 적재 중량물 Flange 전도 시 설비 손상으로 인한 정비 또는 구매 필요(22년도 정기점검 MD 기준 1대당 인건비 계산) 가스히터분야: 516.58[MD] × 309,706원 - 절감비용: 159,987천원 O 중소기업 물량·매출 이익 금액(예상) - 50,000천원(5,000천원 × 10개 지사) | | | |
| | 기업명 | | 홈페이지 | |
| 신청기업 | 대표자 | | 사업자등록번호 | |
| | 담당자 | | 연락처 | |

| 성과공유제 표준계약서(전문) | | | | |
|--|--|--------|--|--|
| □ 과 제 명: | | | | |
| ㅇ 과제수행기간 : 2 | 월 일부터 [~] 20 년 월 일까지(7 20 년 월 일부터 ~ 20 년 월 일까? 20 년 월 일부터 ~ 20 년 월 일까? | 지(개월) | | |
| 위탁기업 : (기업명) (대표자) 수탁기업 : (기업명) (대표자) | | | | |
| □ 과제의 목표 | | | | |
| | 과제의 목표 | | | |
| 정량 | 정성 | | | |
| □ 공동노력 : 위탁·수탁기업의 역할수행 | | | | |
| 대상자 | 역할 | 비고 | | |
| (위탁기업명) | | | | |
| (수탁기업명) | | | | |
| 상생협력기금 활용 | □ 활용 □ 미활용 | | | |

| 구 분 | | 내 용 | | | | 비고 | |
|---------|------------------------|-------------------------------------|------------------------|--------------|------------------|------|---------|
| 공유방식 | | 현금 배분 | | 물량 5 | 및 매출액 | 부확대 | |
| | ㅇ성: | 라공유 내용 | | | | | |
| 공유 내용 | | 과공유 계획(물량, 매 품명, 수량, 단가, 금 | | | | | |
| 공유 기간 | | | | | | | |
| ※ 위의 공유 | ⊥ 내용은 | 업종과 기업의 거래특 | 성을 | 고려해 | 변경할 수 | 있습니 | ㅡ 다. |
| 성실히 의두 | 는([_] 를 이 | 과제에 대하여 위트은) 이 계약문서에 의행할 것을 확약하며, 약 | 비하 [©] 미계역 | 계약을 약의 증기 | : 체결하. H로서 계약 | 고 신의 | 에 따리 |

위탁기업

- 상호 또는 명칭 :
- 전화번호 :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 법인등록번호 :
- ※ 법인등록번호가 없는 개인사업자에 한하여,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수탁기업

- 상호 또는 명칭 :
- 전화번호 :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 법인등록번호 :
 - ※ 법인등록번호가 없는 개인사업자에 한하여,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 첨부 1. 표준계약서 본문(계약일반조건)
 - 2. 개별계약서(특수조건 등)

표준계약서 본문(계약일반조건)

○○○회사(이하 "위탁기업"이라 한다)와 ○○○회사(이하 "수탁기업"이라 한다.)는 성과공유 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기본원칙)

- 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기본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 및 이에 따른 개별계약을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 ②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기본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성과공유 규정과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 요령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조(기본계약 및 개별계약)

이 계약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의 성과공유제 계약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한 것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개개의 거래계약(이하'개별계약'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적용되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개별계약의 내용)

개별계약에는 당해 구체적인 요구수준, 성과공유과제의 목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노력의 내용, 과제 실행으로 인한 성과를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 과제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의 귀속, 과제의 명칭, 과제완료시점, 검사방법 및 성공요건, 기타위탁조건 등 세부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제4조(개별계약의 성립)

개별계약은 위탁기업이 제3조의 거래내용을 기재한 개별계약서를 교부하고 수탁기업이 이를 수락함 으로써 성립한다.

제5조(계약의 변경)

- 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쌍방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상호 합의하여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을 기명날인한 서면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 ② 계약 변경시 과제내용의 변경으로 인해 성과배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협의에 의해 과제내용의 변경에 따른 성과배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 ③ 제1항의 계약변경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일방이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며, 쌍방의 귀책사유가 없거나 귀책사유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제6조(성과의 공유)

- ① 과제 실행으로 인한 성과를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협의에 의하여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과제의 난이도, 수량, 사양, 납기, 대금지불방법, 품질, 재료가격, 노무비, 시가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적정한 관리적 경비 및 이익을 붙여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협의하여 정한다.
- ②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성과배분결정의 기초가 된 제1항의 조건이 계약기간 중 변경되었을 경우 성과공유의 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상호 협의하여 성과의 배분을 다시 정할 수 있다.

제7조(과제확인)

- ①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이 과제물을 위탁기업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 또는 설치를 완료하거나 과제 완료를 통지하면 수탁기업에게 수령증을 교부하거나 과제완료의 통지를 받았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과제물에 대한 검사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별도로 정한 검사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속히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위탁기업은 과제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 검사 결과를 수탁기업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기간 내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 ③ 위탁기업은 검사전의 과제결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 ④ 위탁기업은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중소기업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0호)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내의 성과공유제확산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라 한다)의 과제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8조(공공기관의 수의계약)

- ① 공공기관의 경우 추진본부의 수의계약용 확인서 발급 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 5항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재부령) 제8조 1항 6호에 의거 수의계약하여야 한다. 다만, 구매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구매계약에 의한다,
- ② 공공기관의 경우 수의계약용 확인서를 득한 후 90일 이내에 계약을 하지 아니하여 추진본부의 장이 그 사유 및 근거자료 제출을 요청할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용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9조(과제결과의 소유권)

과제결과의 소유권은 합격된 시점에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귀속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지적재산권 등의 실시 및 출원)

- ①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과제물과 관련 상대방으로부터 사용을 허락 받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 및 기술, 노하우(이하 "지적재산권 등" 이라 한다)를 과제물의 수행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문서에 의한 상대방의 승낙을 얻지 않는 한 제3자에게 지적재산권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②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과제물의 수행과 관련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과 제3자 사이에 지적 재산권 등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문서로서 상대방에게 통지하는 한편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상기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계약 상대방에게 손해가 미치지 않도록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의 비용부담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위 분쟁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③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이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만료 및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후에도 계약 상대방의 도면, 사양서, 지도내용 외에 자신의 기술을 추가하여 제조한 과제물 및 그 과제물 제조방법에 관하여 지적재산권 등을 획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 상대방에게 문서로서 통지하여 지적재산권 등을 공동출원한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상대방의 사전 허락 없이 지적 재산권 등을 획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 상대방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대가없이 상대방에게 권리취득 당사자의 권리 부분을 양도 또는 공유하게 하여야 한다.
- ④ 수탁기업은 수탁기업의 사양에 의거 과제물을 제조하는 경우 그 제품 및 제품의 제조방법이 제3자의 지적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여야 하며 위탁기업의 사양에 따라 과제물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위탁기업이 그 제조방법을 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제조방법이 지적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여야 한다.

제11조(영업비밀의 유지)

- 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계약 및 개별계약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및 기술상 비밀을 상대방의 승낙이 없는 한 이 계약이 정한 목적과 달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만료 또는 해제·해지 후에도 제1항의 의무를 부담하며, 이 규정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권리의 양도)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문서에 의거 상대방의 승낙을 받지 않는 한 이 계약 및 그 부수협정 또는 개별계약으로부터 생기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3조(계약의 해제·해지)

- ①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 1.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 2.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 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을 때
- 3.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어음 및 수표의 부도, 파산선고의 신청, 회사정리의 신청 등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계약 및 부수협정에 의한 약정내용이 이행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 4.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해산, 영업의 양도를 결의하거나 또는 타회사로 합병되어 이 계약 및 부수협정과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하는 경우
- 5.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 6.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재해 및 기타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하는 경우
- 7. 위탁기업이 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의 이행을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함으로써 수탁기업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또는 수탁기업이 특별한 사유 없이 과제의 수행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계약기간 내 과제완료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제1항 각호의 해제·해지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해지되었을 때 피해제자가 해제·해지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지체 없이 변제하여야 한다.
- ④ 해제·해지와 관련하여 해제·해지권자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피해제자·피해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손해배상청구)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이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때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잔존의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기간만료 후 및 계약의 해제·해지 후에도 다음 각호에 관한 의무를 진다.

- 1. 제10조에 정하는 지적재산권 등에 관한 사항
- 2. 제11조에 정하는 기밀유지에 관한 사항

제16조(이의 및 분쟁의 해결)

- 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계약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서면상의 자료에 따르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 ②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있는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 | 20 | 년 | 월 | 일 | |
|------|-----|----|---|---|---|
| | | | | | |
| 위탁기업 | 주 | 소 | | | |
| | 상 | ত্ | | | |
| | 대 표 | 자 | | | 인 |
| | | | | | |
| 수탁기업 | 주 | 소 | | | |
| | 상 | 호 | | | |
| | 대 표 | 자 | | | 인 |

【별지4】성과공유과제 결과보고서<신설 2020.08.18>

| 성과공유과제 결과보고서 | | | | | |
|----------------|--------------|----------|---------|------|--|
| 과 제 명 | | | | | |
| 수탁기관 | | | | | |
| 시행분야 | | | | | |
| 과제기간 | | | | | |
| 수행내용 | | | | | |
| 성과공유 내용 | | | | | |
| | ㅇ 성과공유 실적(물량 | 냙·매출 실적, | 향후계획 등) | | |
| 성과공유 실적 | 품명 | 수량 | 단가 | 금액 | |
| | | | | | |
| 첨부 : 세부추진실적 1부 | | | | | |
| | | | 20 년 | 월 일 | |
| | | | 부서명 : | 처·지사 | |
| | | | 제출자 : | (인) | |